

【 9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3. 19.

발 의 자 : 이항원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되어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 폐지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면 「양주시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같은 조례 폐지”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며, 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③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개발국장과 건설행정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각 실과소 재해대책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④통제관 및 담당관과 각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을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영관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양주경찰서
 2. 육군 제25사단, 육군 제26사단, 육군 제65사단
 3. 동두천교육청
 4. 한국통신공사 의정부전화국·동두천전화국
 5.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동두천지점
 6. 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7. 철도청 의정부보선분소
 8.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본부장은 재해기간(6. 15 ~ 10. 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유관기관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조례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